

규정문서번호TWP-A401제정일자1998. 09. 01.연구관리업무 규정개정일자2014. 03. 24.개정번호 4 페이지1/11

목 차

제1장 총칙
제2장 교비연구비 관리
제3장 외부연구비 관리
제4장 간접비 관리
제5장 보칙

작성부서	산학협력단	제정일자	1998. 09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승 인		
직 책						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규정

문서번호	TWP-A401		
제정일자	1998. 09. 01.		
개정일자	2014. 03. 24.		
개정번호 4	페이지 2/11		

개정이력		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		
1	2009. 01. 30	- 4차 개정		
2	2012. 06. 04	- 연구업무 및 연구비 관리 규정 형식 변경에 따른 전부개정		
3	2012. 08. 24	- 교원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전임강사→조교수로 명칭 변경		
4	2014. 03. 24	- 간접비 계상 기준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		



규정 연구관리업무 규정

문서번호			TWP	-A401
	제정일	자	1998.	09. 01.
	개정일:	자	2014.	03. 24.
	개정번호	4	페이지	3/11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 교직원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연구비"라 함은 교비연구 및 외부연구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하며 지원기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- 가. "교비연구"라 함은 이 대학교의 연구지원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를 말한다.
- 나. "외부연구"라 함은 정부기관 또는 각종 법인체 등이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거쳐 지원하는 연구를 말한다.
- 2. "연구책임자"라 함은 연구과제의 계획, 수행 및 연구비의 사용·정산의 책임자를 말한다.
- 3. "연구비의 중앙관리"라 함은 연구비를 이 대학교의 연구비 관리기관(이하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간접비"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직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한 경비로 인력지원비, 연구지원비, 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성한다.
- 5. "연구물품"이라 함은 연구비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구매한 기기·기구 및 도서 등을 말한다.
- 6. "연구문서"라 함은 교·내외 연구과제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 및 사용증빙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외부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.

- 제4조 (관리기관) ① 교비연구비의 관리기관은 산업기술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가 되며 외부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. 다만,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부설 연구소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연구과제,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등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**제5조 (연구비의 관리)** ① 연구비는 신뢰성, 준법성, 합목적성에 기초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4조의 관리기관의 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비를 관리한다.



문서번호 TWP-A401 규정 제정일자 1998. 09. 01. 개정일자

연구관리업무 규정

- 2014. 03. 24. 개정번호 4 페이지 4/11
- ③ 모든 연구비는 관리기관을 통해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.
- ④ 관리기관은 연구비관리를 위하여 현금출납부 및 연구비 지급대장 등을 비치하고 수입 및 지출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한다.

제2장 교비연구비관리

제6조 (교비연구의 지원원칙) ① 교비연구는 이 대학교 교직원 연구활동의 진작, 행정의 효율 화, 경쟁력 강화, 산학협동교육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,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은 일반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(신청자격) ① 연구책임자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 며,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선임한다.

-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연구비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.
- ③ 연구책임자로 1개 이상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2개 이상의 교비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비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특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 (심사 및 선정기준) ① 연구과제의 심사 및 선정은 「산업기술연구소운영규정」제7조 의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의 변경 및 연구비 감액 등의 변경을 조건으 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연구목적의 명확성
- 2. 연구의 필요성
- 3.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
- 4.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활용도
- 5. 학문발전에의 기여도
- 6.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업적

제9조 (실행예산서 편성 및 변경) ①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 구비실행예산서(이하 "실행예산"이라 한다)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

문서번호 TWP-A401 제정일자 1998. 09. 01. 개정일자 2014. 03. 24. 개정번호 4 페이지 5/11

연구관리업무 규정

규정

② 실행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 (연구비의 지급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집행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에 연구비지급을 신청한다.

- 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(이하 "영수증 등"이라 한다)를 관리기관에 제출한다.
-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연구비지급신청과 제2항의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.
- ④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연구비 지급상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연구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제5항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른다.

제11조 (연구비정산 및 사용의 책임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집행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야 한다.

② 연구비 정산 및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.

제12조 (연구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 발표 등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결과를 논문 또는 저서로 발표·출판하는 때에는 "이 연구는 20○○년도 동원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"이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소정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.

제13조 (연구결과평가) 운영위원회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총장이 확정한다.

제14조 (연구계획의 변경) ① 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수행 중에 연구기간, 연구내용, 연구제목, 연구진 및 연구비예산 등 연구계획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종료 1개월 전에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

규정

문서번호	TWP-A401		
제정일자	1998. 09. 01.		
개정일자	2014. 03. 24.		
개정번호 4	페이지 6/11		

제15조 (연구의 중단 등) ① 연구수행 중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질병, 사고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충실하게 연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의 사망,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연구책임자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.

제16조 (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)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의 지급을 중단하며,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- 1. 연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연구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
- 2.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대학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3.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
- 4.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- 5.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
- 6.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제17조 (연구비잔액의 처리) 연구과제 기간 종료 후 남은 잔액은 교비연구비로 편입된다.

제3장 외부연구비관리

제18조 (신청자격) 외부연구비는 연구비지원기관이 정하는 신청자격에 따른다.

제19조 (외부연구의 성립요건) 외부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때 인정한다.

- 1. 연구목적사업임이 명확할 것
- 2. 총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
- 3. 관리기관의 회계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진 것
- 4. 외부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

제20조 (연구계획서) 연구계획서는 연구비지원기관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기관에 제출한다.

제21조 (연구계약) ① 외부연구계약은 관리기관의 장의 명의로 체결한다. 다만, 지원기관의 요



규정

문서번.	ই	TWP-A401		
제정일	자	1998.	09. 01.	
개정일:	자	2014.	03. 24.	
개정번호	4	페이지	7/11	

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② 외부연구과제를 계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연구계약문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.
- ③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근거하여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한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직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, 연구비는 관리기관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을 위반한 외부연구과제는 교직원의 인사평정에 반영할 수 없다.

제22조 (연구계약 등의 변경) 연구책임자가 연구계약이나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.

제23조 (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) ① 연구비의 예산 및 지급관리는 관리기관에서 담당한다.

- ② 연구비집행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되, 연구비카드 사용이 곤란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써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연구비의 입금 및 출금 등 일반회계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.

제24조 (연구비의 사용기간)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,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기관에 통보한다.

② 연구비지출 및 정산 등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

제25조 (연구보고서의 제출) ① 연구보고서의 제출에 대하여 제12조를 준용하되, 연구계약서에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.

② 지원기관이 보고서의 발간 및 관리에 있어서는 특별히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6조 (계약해지 및 구상권)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지원기관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연구책임자가 성실한 연구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이 대학교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

규정

문서번호	TWP-A401
제정일자	1998. 09. 01.
개정일자	2014. 03. 24.
개정버ㅎ 1	페이지 8/11

제27조 (중단연구에 대한 지원)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사정으로 연구수행이 중단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계속 지원을 위한 교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연구과제지원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비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교비지원이 되는 때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8조 (이자관리 등) ①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회계관리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 과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, 관리기관 간접연구경비로 산입한다.

② 연구과제 종료 후 남은 잔액은 간접연구경비에 입금하여 관리한다. 다만, 지원기관에서 반납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.

제4장 간접비 관리

제29조 (간접비의 징수) ① 간접비는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이 대학교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연구비와 연구관련 기부금을 대상으로 징수한다.

- ②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간접연구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제7항에 따라 교육부가 회계연도마다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하고, 산업체 수탁 연구사업의 경우 8%를 징수한다. 다만,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14.03.24.>
- ③ 간접비는 다른 연구경비집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30조 (간접비의 사용) ①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
- 1. 인력지원비
- 가. 지원인력 인건비: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
- 나.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: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(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)
- 다. 연구개발능률성과급: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
- 2. 연구지원비
- 가. 기관 공통지원경비: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
- 나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: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



규정

연구관리업무 규정

문서번.	호	TWP-A401		
제정일	자	1998.	09. 01.	
개정일:	자	2014.	03. 24.	
개정번호	4	페이지	9/11	

구입경비

다. 연구실 안전관리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하는 경비(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. 다만,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)

- 라. 연구보안관리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
- 마. 연구윤리활동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·운영,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,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
- 바. 연구개발준비금: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, 연구 연가,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(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,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
- 사.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: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,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성과활용지원비

- 가. 과학문화활동비: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 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
- 나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: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 요한 경비,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·운영, 연구노트 교육·인식확산 활 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
- ②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- ③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확보를 위한 대학대응자금 또는 제1항 제1호 다목 이외의 연구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31조 (간접비의 회계) ①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관리기관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·운영한다.

-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③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.



TWP-A401 문서번호 규정 제정일자 1998. 09. 01. 개정일자 2014. 03. 24. 개정번호 4 페이지 10/11

연구관리업무 규정

제32조 (간접비의 사후징수) 제21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간접비를 관리기관에 납 부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33조 (연구의 사후관리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될 경우 관리기관에 연구성과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기관은 연구성과를 교내·외에 홍보할 수 있으며, 산업체와 협동으로 연구성과를 지속시 키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34조 (연구물품) ①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물품을 신속하게 구매·공급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물품구매청구서와 해당 물품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기관은 물품구매청구서를 검토하여 구매담당부서를 통하여 구매절차를 진행한다.
- ④ 구매한 연구물품은 연구기간 종료 후 이 대학교로 귀속한다.

제35조 (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) 연구결과로 생산된 산업재산권, 연구보고서 판권 및 시제품 등은 취득 즉시 관리기관에 귀속한다. 다만, 지원기관과 별도 협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따른다.

제36조 (연구장려금의 지급) ① 산학협력 및 연구성과 증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는 연구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연구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7조 (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) ① 연구문서는 지원기관에 따라 과제별, 사업기간별로 분 할하여 편철한다.

② 연구문서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보관 및 취급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8조 (비밀유지 및 보안관리) ① 본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은 비밀유지 를 하여야 하며, 특히 국가안위와 관련된 연구과제, 지원기관의 기술보호 등을 필요로 하는 연 구과제에 대해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.



규정 -----연구관리업무 규정

문서번호	TWP-A401
제정일자	1998. 09. 01.
개정일자	2014. 03. 24.
개정번호 4	페이지 11/11

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9조 (연구윤리 준수)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때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로 정한다

제40조 (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)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,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를 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1조 (기타)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대학교의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